

#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24,709,117	168,741,274
일반회계	4,857,082,838	145,712,485
특별회계	767,626,279	23,028,788
공기업특별회계	298,775,565	8,963,26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8,775,565	8,963,267
기타특별회계	468,850,714	14,065,521
대학운영특별회계	9,096,852	272,906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34,320,633	1,029,619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000,000	90,000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845,818	25,375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420,701,058	12,621,03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86,353	26,59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497,01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2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